[별첨문서1]

소송쟁점 정리

1. 원고에게 소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주장 : 1965. 9. 5. 한국과 월남 사이에 체결된 한·월 군사실무 약정에 따라 베트남 인들이 한국 군인들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주장

원고 주장 : 피고가 주장하는 1965. 9. 5. 한·월 군사실무 약정 등은 조약이 아닌 군사 당국 간 절차합의에 불과하고, 그조차 실효되었으며,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약정인 1969년 개정 약정에서는 '개인 청구권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본 사건에 영향이 없음(특히 이미 실효된 1965. 9. 5. 약정이 아직도 유효한 것처럼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한 것은 매우 부당한 소송수행임).

피고 주장 : 1969년 약정은 '군인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이 없다는 뜻일 뿐임.. 퐁니 사건과 관련해서 약정에 따른 조사 등이 있었기에 약정에 따라 베트남 일반 국민의 청구권은 포기된 것으로 해석해야 함.

2. 준거법

피고 주장 :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 아닌, 1968. 2. 불법행위 당시 남베트남 민법이 적용되어야 함.

원고 주장 : 국제사법 제21조 제1항 소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은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대한민국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 성격)이므로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리가 준거법이 되어야 함(대법원 2017다218895 참조).

3. 국가배상법 소정 상호보증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주장 : 상호보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베트남 국민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할 수 없음(특별한 근거는 없음).

원고 주장 :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베트남인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국내 본안판결이 다수 있었다는 점, 상호보증주의는 반인도적 전쟁범죄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소송에서 상호보증은 인정되어야 함.

4. 대한민국 소속 군인들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는지 여부

피고 주장 : 베트콩이 한국군인으로 위장하였거나 북한 심리전 부대의 개입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국 군복을 입었으며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한국군임을 알 수 있었다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가해자가 한국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 주장 : 원고 진술, 참전군인・목격자들의 진술,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대장들의 녹취록 및 인터뷰 기사, 파월한국군전사, 주월미군감찰보고서(여기에 첨부된 주월미군, 남베트남 민병대원들, 목격자들의 진술서 및 미군이 직접 찍은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면 퐁니 사건은 한국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행위라는 점, 그 과정에서 원고 가족들이 살해되고 원고도 복부에 총상을 입은 점이 인정됨.
특히, 소대장들을 비롯한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원들 스스로가 퐁니 사건이 자신의 부대원 중 일부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퐁니 사건에 대해 1968. 4.경 헌병대에서, 1969. 11.경 중앙정보부에서 각각 관련자들을 조사하였으나, 피고는 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이는 피고 역시 퐁니 사건이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5.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 주장 : 만약 한국군인들이 민간인을 살인·상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전쟁은 게릴라전의 특수성이 있는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원고 주장 : 교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닌 민간인 거주지역의 수색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학살된 사람 중 상당수가 아이·노인·여성이라는 점, 당시 작전을 수행한 참전군인들이 일관되게 마을 주민들의 저항이나 공격행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퐁니 사건 학살의 양태가 마을 주민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 근거리에서 총격을 가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특히 원고의 경우 8세 아동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군인들의 불법행위는 교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 등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

6. 소멸시효

피고 주장 : 불법행위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원고 주장 : 본 사건은 문경 학살 사건(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및 미군위안부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를 인정하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별첨문서2]

1. 2022. 11. 15. 변론기일에 진행된 원·피고 최종 PPT

- 원고 응우옌티탄 측 PPT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EhE8rIoOcp42nBfAyKSXmpVMWJSPskqM/view?usp=share_link

- 피고 대한민국 측 PPT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6gmhmSYwuynISf8Gq8MgkfK8pfBwm4DZ/view?usp=share_link

2. 2022. 8.경 원고 응우옌티탄 등 방한 사진

- 사진출처를 "베트남전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또는 "베트남전 시민네트워크")로 표시해주시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https://photos.app.goo.gl/Gigpa5L6x2NMn2GK9